

일본서 중고복사기 수입, 인증없이 조립판매 적발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월 21일 일본에서 폐기한 복사기 또는 중고복사기를 수입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품 등을 새로 조립해 판매한 S사 등 수입·유통업체 6곳을 적발, S사 대표 채모씨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P사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S사 대표 정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22일 6개 업체 창고 등에 보관돼 있던 일본산 중고복사기 159대 및 부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복사기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하려면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입업자로부터 일본에서 폐기한 복사기나 중고복사기를 대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해 자사 창고에서 수리한 뒤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대당 200만~1000만원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복사기 및 컬러복사기 688여 대, 17억원 어치를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노트북PC·디지털카메라·디지털복사기 등 고가의 디지털 제품이 불법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수입 복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최근 한국광학기기협회를 중심으로 복

사기 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비정품을 포함해 불법 수입 복사기는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복사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할 때 고철로 분류해 통관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함은 물론, 품질 검증과 형식 승인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재 등을 비롯해 사용자의 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며,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또한 외국에서 폐기처분된 기계 및 중고 제품을 싼값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시 서비스와 부품 및 소모품 등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불법 수입 복사기의 유통은 국내 업계와 소비자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제품 구매시 불법 유통 복사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자료제공 : 한국후지제록스(주)〉